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4. 13.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총무과)
- 제출일자: 2022. 4. 1.
- 회부일자: 2022. 4. 1.
- 검토기간: 2022. 4. 2. ~ 4. 6.(5일간)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있는 통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5조)
- 운영하지 않는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 통장 표창 수여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입법예고(2022. 3. 4.~3. 24.) 결과: 의견 없음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21. 10. 21. 시행)에 따라 지방행정의 하부조직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임명”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장 임명 관련 규정과 실효성 없는 주민자치회 규정을 삭제·정비하고,
-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 통장에 대한 표창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중심의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통은 6개반 이상 9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위촉 및 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신개발 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
3. 통장은 통장 중 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던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장 지원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통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통장은 해촉된 날부터 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통 관할 구역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④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2. 해당 통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5.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6.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추진 지원 및 홍보
3. 사건, 사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5. 각종 시설 확인
6. 구성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주민생활 및 보건복지업무 지원
8.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통장은 주민이 알아야 할 긴급한 홍보사항이 있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어 주민자치회에 건의된 사항과 그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 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처리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2011. 3. 2)

제11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행정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